



문서번호	감사담당관-733
결재일자	2015. 1. 2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43호

주무관	인권팀장	감사담당관	부구청장	
권윤정	이필재	김상집	01/26 代소판수	
협조				

- 우리 구 산업현장 종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-

2015. 산업재해 종합 관리 계획

2015. 1.



성 동 구
(감사담당관)

사 전 검 토 사 항

∴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구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 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영향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유지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른 공공언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요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자원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서 울 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DT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뉴스레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구소식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행정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리플릿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홍 보 제 목 : ● 중점 홍보사항 - - 	
<p>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p>	

- 우리 구 산업현장 종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-
2015. 산업재해 종합 관리 계획

우리 구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산업재해를 예방코자 함

I | 관련근거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조 (사업주 등의 의무)
 -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·증진시키는 한편,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.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1조 (안전·보건교육)
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(제4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)

II | 우리 구 산재현황 및 문제점

- 우리 구 재해 발생 현황
 - 연 도 별

구 분	2014. 12월 현재	2013년	2012년
사업장수(개소)	70	50	41
근로자수(명)	1,376	2,166	1,446
발생건수	8	11	6
재 해 율(%)	0.58	0.50	0.40

※ 전국 재해율: '11년 0.65% ⇒ '12년 0.59% ⇒ '13년 0.59%
 선진국 재해율: 독일(0.13%), 일본(0.19%), 미국(0.37%)

○ 부 서 별

(단위:명)

연번	구 분	2014년	2013년	2012년	비고
	계	8	11	6	
1	노인청소년과	2	5	1	노인일자리(5), 재가관리사(3)
2	일자리정책과	2	1	3	공공근로(5), 지역공동체(1)
3	청소행정과	-	1	2	환경미화원(3)
4	공원녹지과	-	3	-	공원녹지유지관리(3)
5	질병예방과	2	-	-	방역소독(2)
6	세무1과	1	-	-	개별주택현황조사사업(1)
7	교통지도과	-	1	-	불법주정차단속원(1)
8	사회복지과	1	-	-	장애인 행정도우미(1)

- 고령 근로자(전체 재해자의 80%)가 많은 공공일자리 사업부서인 노인청소년과,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 산재의 60% 이상 발생

□ 우리 구 산재 관리 현황

연번	부서명	사업장수	근로자수	연번	부서명	사업장수	근로자수
	총 계	70	1,376				
1	공보담당관	1	2	12	사회복지과	8	209
2	총 무 과	6	55	13	노인청소년과	6	582
3	교육지원과	2	7	14	청소행정과	1	113
4	문화체육과	1	5	15	공원녹지과	2	36
5	전산정보과	3	9	16	교통행정과	3	28
6	민원여권과	1	3	17	교통지도과	3	21
7	지역경제과	3	6	18	토목과	2	9
8	일자리정책과	6	207	19	안전치수과	2	16
9	세무1과	1	4	20	건강관리과	7	14
10	주민생활과	1	4	21	보건의료과	3	8
11	보육가족과	3	23	22	질병예방과	5	15

□ 재해 원인 분석

○ 근로형태별

구 분	계	공무직	무기계약직	기간제	일용직
계	25	1	3	9	12
2014년	8	-	-	4	4
2013년	11	1	1	5	4
2012년	6	-	2	-	4

- 매년 사업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일시적 근로자의 채용이 증가하여 기간제 혹은 일용직 근로자의 재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임.

(붙임 1)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 내역 참조

○ 시 기 별(2012년 ~ 2014년)

구 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재해자수	2	1	4	1	2	1
구 분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재해자수	1	2	1	6	-	4

- 야외작업이 많은 봄, 가을철인 3 ~ 5월(7건), 9 ~ 10월(7건)에 발생한 재해가 전체의 56%를 차지
- 겨울철(1 ~ 2월, 12월)에 빙판길에서 작업하다 미끄러져 골절이나 빠임 (총 25건중 17건, 기타 찢림이나 베임 8건)등의 재해가 다수 발생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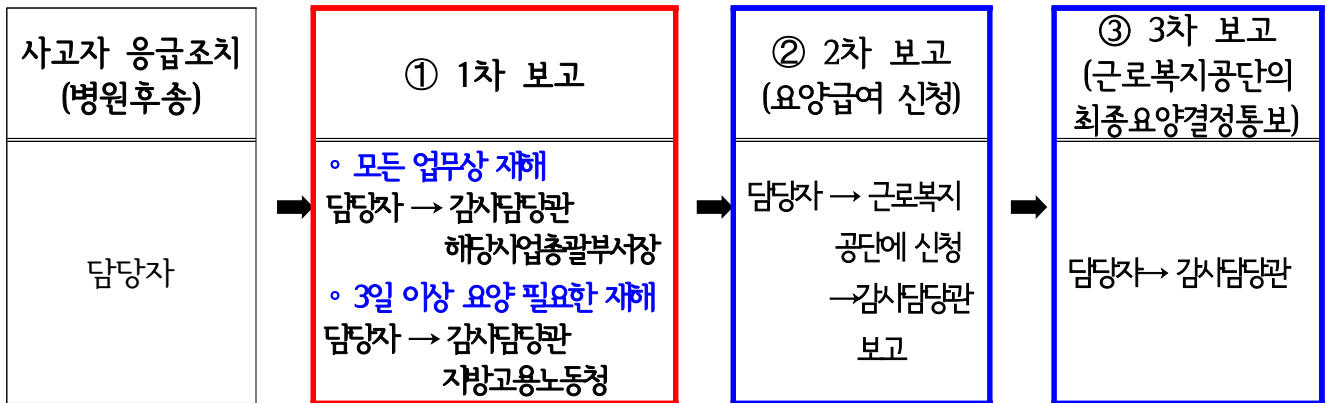
□ 문 제 점

- 부서마다 시행하는 사업이 다양하고, 사업장 또한 분산되어 있어, 효율적인 산재관리가 용이하지 않음(22개 부서 70개 사업, 1,376명)
- 노인일자리사업에 참가하는 고령층의 산재 발생건수가 꾸준하여 2014년 산재의 25%(8건 중 2건) 차지
-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 보고 지연
 - 산업재해 실태 파악 후 경위보고서 작성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지연
 - 산재업무처리 매뉴얼의 미숙지
- 산재예방에 대한 안전보건 의식 부족

III

산재관리 세부계획

1. 산업재해 종합 관리 시스템 운영 강화-----<감사담당관>



○ 1차 보고 : 업무상 발생한 모든 사고

- 사고 현장 담당자는 신속하게 '해당 사업 총괄 부서장' 및 '감사담당관'에 보고
- 보고기한: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(사고발생 동향보고는 즉시)
- 보고방법: 업무관리시스템 서식 NO. 68 사고경위조사보고서 내부결재(감사담당관 인권팀 협조)
- 첨부서류: 담당자 현장 출장보고서(현장사진 포함), 재발방지계획서, 의사소견서(진단서)

※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보고(전화, 팩스 등)

○ 2차 · 3차 보고 : 산재(요양급여) 신청(2차), 공단의 최종 요양결정통보(3차)

- (2차) 재해자가 산재 신청을 할 경우, 해당 사업 총괄 부서에서 처리
- (3차)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요양 결정 통보(승인 또는 미승인)

※ 보고방법: 일반 기안문 형식

※ 첨부서류: 1차 보고서 및 요양신청서 사본, 재발방지계획서, 기타 관련 서류

- 산재 발생 시 조사 결과 발생 원인이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일 경우, 사안 경중에 따라 관련 직원 조치

산 업 재 해 보 고 의 무

※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4조

- ▣ 사업주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
 1. 지방고용노동청(성동구 관할: 서울동부지청)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
 2.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해야 함
- ▣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(전화, 팩스 등)

✓ 중대재해란?

- 사망자 1인 이상 발생
-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
-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

▶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위반 시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2. 사업장 안전 점검 실시 -----<감사담당관>

- 점검횟수: 연 2회
- 점검내용
 - 작업장의 안전실태 및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
 - 안전교육실시 여부
- 점검방법: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표에 의거 사업장 방문 점검
- 점검결과: 준수사항의 이행 독려,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결과 제출
 - ※ 공단위탁 재활용선별장은 자체 안전 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

3. 사업장별 관리 감독 및 책임 강화 -----<해당부서>

□ 사업장별 안전관리대책 자체 수립 후 시행

- 사업시행 및 근로자 채용 시에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여 계획수립
 - 작업내용별 기본 안전 수칙
 - 작업장 안전관리점검 실시 방법 등

□ **사업장별 안전책임자(사업담당부서장) 및 안전관리담당자(사업담당 직원)의 안전보건 관리 역할 강화**

- 공공일자리사업의 경우, 총괄부서(일자리정책과, 노인청소년과, 사회복지과)에서 각 부서별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
- 안전관리담당자의 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
 -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
 - 개인안전보호구의 착용 철저 지도
 - 산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

□ **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처리 능력 제고**

- 산업재해 발생 유형 및 발생 시 처리절차, 예방 방법 등 참고자료를 우리 구 새울행정시스템 FAQ에 등재, 담당자가 숙지토록하여 업무 능력 제고

4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-----<감사담당관, 해당부서>

□ **안전보건 교육 실시(감사담당관)**

- 교육대상: 각 사업(공공근로, 무기계약직, 기간제근로) 운영 담당자
- 교육횟수: 연2회
- 교육강사: 협회 추천 외부강사 초빙
- 교육내용: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및 적용기준, 산재예방의 필요성, 안전수칙 등

□ **사업장별 소속 근로자 교육(해당부서)**

- 교육대상: 사업장 소속 근로자(공공근로, 무기계약직, 기간제근로 등)
- 교육방법: 부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(채용 시, 정기, 작업변경 시, 특별교육)

IV

행정사항

- 부서별 자체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제출(해당부서) - '15. 1. 30.(금)까지
- 2013. 7월 고용노동부 수감 시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서에서는 2015년 점검 대비 철저
 - 직원 건강검진 미수검(38건)-----총무과
 - 현장점검 지적사항(12건)-----총무과, 청소행정과, 안전치수과, 토목과
 - 산재 처리 서류 미보존(10건)----일자리정책과, 청소행정과, 노인청소년과, 사회복지과, 교통지도과

- 붙임 1.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 내역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내역.
2. 산업재해 업무 처리 매뉴얼.